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학 교 체 육 진 흥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은혜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최근 잦은 폭력과 폭언으로 국가대표 출신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계기로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로부터 학생선수를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학교장의 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한 주기적인 감독의무를 부여하고, 학교 체육시설의 주요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가능하게 하고,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실시와 인권침해 발생 시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학교체육 진흥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7498호, 2020. 10. 20. 공포, 2021. 4. 21. 시행)됨에 따라, 학교장의 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한 감독 주기·방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가능한 학교 체육시설 주요지점 구체화,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실시 시간·내용 및 인권침해 발생 시 조치 등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학생선수를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20.7.14., '20.10.12.)를 반영하여 학교체육 진흥 기본시책에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명시하고,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에 훈련 및 대회 참가 시 학생선수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재임용 포함) 시 징계전력, 학습권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평가 항목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에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포함(안 제2조)

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에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함.

나. 학교장의 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한 주기적인 감독 실시(안 제2조의2)
학교장의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연1회 이상 방문점검 또는 서면점검을 통해 학교장의 학교체육 진흥 조치를 감독하도록 함.

다.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재임용 포함) 및 급여를 정할 때 징계전력, 학습권 보장 등 반영(안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 제3조제4항).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재임용 포함) 및 급여를 정할 때 징계전력, 학습권 보장, 학생선수 인권보호, 각종 교육 및 연수 이수 등에 관한 항목을 포함하여 실적 중심의 학교운동부 운영을 인권친화적인 학교운동부 운영으로 개선하도록 함.

라.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에 학생선수 보호를 포함(안 제3조제3항)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에 학생선수 보호 항목을 포함하여 훈련 및 대회 참가 시 각종 안전사고 및 인권침해로부터 학생선수가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함.

마. 학교 체육시설 주요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제도

도입(안 제3조의3)

학교운동장 사각 지대, 체육관·체력단련장·탈의실·체육용품 보관실
· 학교운동부기숙사 등의 출입구와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바.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의무화 및 학생선수 대상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발생 시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를 취하는 제도의 도입(안 제3조의4)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학기별
1회, 1회당 1시간 이상으로 하되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분리하여 실시하고, 학생선수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때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조치가 적절하게 취하여지고 있는지를 연1회 이상 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독은 방문점검 또는 서면점검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제1항 중 “임용”을 “임용(이하 본 조에서는 재임용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도경력과 실적을”을 “본 조 제4항 각 호를 종합적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훈련 및 대회 참가 시 학생선수 보호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임용할”을 “임용할”로, “재임용 여부”를 “임용 여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도경력
5.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노력
6.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
7. 학교운동부지도자 대상 각종 교육 및 연수 이수
8. 학생선수 대상 훈련 프로그램의 질
9.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및 각종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전력
10. 그 밖에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3조의3, 제3조의4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학교 체육시설 주요 지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관리)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학교 체육시설 주요 지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운동장 사각 지대
2. 체육관, 체력단련장, 탈의실, 체육용품 보관실, 학교운동부기숙사 등의 출입구
3.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점

②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의4(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등)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은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분리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은 학기별 1회, 1회당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스포츠 분야 폭력, 성폭력 예방
2.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3. 스포츠 분야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발생 시 대응 및 신고 방법
4. 그 밖에 교육을 주관하는 기관에서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④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에게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때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권한의 위임) 법 제19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이 관할하는 학교의 감독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 4. 21.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 ①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략) <u><신 설></u> 5. (생략) ② (생략) <u><신 설></u>	제2조(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 ①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u>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u>제2조의2(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조치가 적절하게 취하여지고 있는지를 연1회 이상 감독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감독은 방문점검 또는 서면점검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u>
제3조(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 기준 등) ① 학교의 장은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	제3조(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 기준 등) ① ----- ----- -----

지도자 중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임용할 수 있다.

②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급여는 학교의 장이 지도경력과 실적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학교운동부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 4. (생략)

<신설>

④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재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 임용(이하 본 조에서는 재임용을 포함한다)-----

--.

② ----- 본 조 제4항 각 호를 종합적으로 ----.

③ -----.

1. ~ 4. (현행과 같음)

5. 훈련 및 대회 참가 시 학생선수 보호

④ ----- 임용할 -----

----- 임용 여부-----.

1. ~ 3. (현행과 같음)

4. 지도경력

5.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노력

6.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

7. 학교운동부지도자 대상 각종 교육 및 연수 이수

8. 학생선수 대상 훈련 프로그램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램의 질

9.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및
각종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전
력

10. 그 밖에 학교장이 필요하
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3조의3(학교 체육시설 주요 지
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관
리)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학교 체육시설 주요 지점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운동장 사각 지대
2. 체육관, 체력단련장, 탈의실,
체육용품 보관실, 학교운동부
기숙사 등의 출입구

3.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
다고 판단한 지점

②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
기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
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의4(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등)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
른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은 학
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분리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은 학기별 1회, 1회당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스포츠 분야 폭력, 성폭력 예방

2.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3. 스포츠 분야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발생 시 대응 및 신고 방법

4. 그 밖에 교육을 주관하는 기관에서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④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에게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때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권한의 위임) 법 제19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이 관할하는 학교의 감독 권한을 교육감

에게 위임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체육예술교육지원팀	
연 락 처	(044) 203 - 6641